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내 불법행위 저지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13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12813)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내 불법행위 저지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2
2. 항공기 출입문 개방 등에 대한 벌금형 신설(안 제46조제1항)	14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128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9. 9.
3. 회 부 일 : 2025.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내 불법행위 저지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신설)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 현행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장 등이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장등의 요청이 있어 협조한 승객이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저지행위가 불가피하고 저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항공기 내 불법행위 저지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항공기 내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행위를 저지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저지행위가 불가피하고 저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행	개정안
	<u>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어 협조한 자</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최근 5년간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 흡연, 비상문 개방 시도 등 불법방해행위는 총 2,0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후 위해, 폭행 및 협박, 조종실 출입기도, 비상문 개방시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비상문 개방 시도는 2023년 5건, 2024년 14건, 2025년 1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실제 개방이 이루어진 경우도 2건¹⁾ 있었음.

1) ① '23.5, 아시아나 대구공항 착륙 중 210m 상공, ② '25.4, 에어서울 이륙 준비 중

【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20년~'25.8월) 】

구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	성적수치심 유발	폭행 및 협박	흡연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비상문 개방시도	기타	소계
20년	14	3	4	0	103	0	1	0	4	129
21년	18	2	3	2	50	1	1	0	9	86
22년	27	0	7	0	223	0	0	0	4	261
23년	38	14	18	2	465	0	1	5	17	560
24년	64	10	18	9	507	1	0	14	33	656
25.8	33	4	23	7	306	0	0	10	12	395
합계	194	33	73	20	1,654	2	3	29	79	2,087

※ 자료 : 국토교통부

현행법에 따르면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나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내 승객 등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²⁾

2) 「항공보안법」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

실제로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을 공격하거나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에서, 승무원만으로 제지가 어려워 다른 승객들이 난동 승객을 제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³⁾⁴⁾⁵⁾

다만, 이러한 제압 과정에서 난동 승객을 좌석에 묶거나⁶⁾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등 저지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승무원과 승객이 기내 불법방해행위 시도자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던 중 타인에게 피해 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장등이 항공기 내 불법방해행위를 저지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저지행위가 불가피하고 저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중앙일보, 「팍스타 리차드 막스 항공기 난동 막았다」, 2016.12.21.

-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 안에서 만취승객이 4시간 동안 기내난동을 일으켜, 다른 승객들이 난동 승객을 제압하였음. 제지 활동을 했던 한 승객은 승무원들이 해당 상황에 대처할만한 능력이 부족했다고 당시 상황을 알림.

4) 파이낸셜 뉴스, 「욕하고 승무원 폭행, 항공기 난동…승객제지→결국 체포」, 2025.6.28.

-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승무원과 승객들이 난동 승객을 제지함.

5) 이투데이, 「인천발 방콕행 항공기서 태국인 승객 난동…보안장비로 제압」, 2018.9.17.

- 한 승객이 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려,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과 힘을 합쳐 보안장비를 이용해 제지하였음.

6) 아주경제, 「제주항공 항공기서 “비상문 열겠다”…승객 또 난동」, 2023.6.19.

- 갑자기 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해 승무원이 제지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한 사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경찰·소방·군인·구조대원 등이 직역 수행 과정에서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본래 직역 업무 수행이 아니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일반인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는데, 공항에 침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임·직원이 퇴치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면책을 두고 있는 「공항시설법」, 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면책을 두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면책을 두고 있는 「전파법」 등이 있음.

【 직무 수행으로 인한 면책 관련 입법례 】

직역 수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	----------------------	--

		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u>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119구조·구급 에 관한 법률 *구조·구급대원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처치행위자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u>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학교보건법 *보건교사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의 장 및 교원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③ 학교 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 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u>지지</u> 아니한다.
특정 업무 수행	공항시설법 *공무원·임직원	제56조의2(면책) 제56조제3항 각 호의 자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퇴치등을 행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 우 그 퇴치등이 불가피하고 퇴치등을 행한 공무원 또는 임직 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종사자를 제외한 일반인 등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 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 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 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 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파법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	제29조의2(면책)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기장과 승무원, 승객에게도 이러한 면책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저지행위가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⁷⁾ 등의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장과 승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⁸⁾로서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⁹⁾

이에 대한 면책제도는 경찰, 소방 등과 같이 공익적 직무수행에서의 위축을 막고, 종사자에게 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즉각적인 제지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실익¹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7)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0)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형법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일반 원칙에 따른 면책도 가능하나, 「항공보안법」에 경찰, 소방, 군인 등과 같이 면책규정을 명시하여 항공종사자의 공익적 직무수행 위축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형법」

특히 항공기는 고도 상공에서 고속으로 운항하는 특성상 착륙 전까지는 비행 중 비상 상황 대피가 극도로 제한되고 외부의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폐쇄된 공간으로, 비행 중 승객의 난동이나 폭력, 비상문의 개방시도는 항공 보안과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이러한 항공운항의 특수성에 비추어 실제로 기내에서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만으로 제지가 어려워 승객이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기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승객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리¹¹⁾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보다 저지행위 긴급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직무수행 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狀)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11) 근로감독관,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각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다만, 형사책임의 면책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¹²⁾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면책의 요건이 되는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어 면책 상황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¹³⁾

12) 제21대국회, 제392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2.1.10.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면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경찰의 면책 범위가 광범위하여 집회·시위 등 일반 행정법령 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용될 경우 경찰권 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면책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제기한 범죄로만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13)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구체적인 불법방해행위를 저지하는 경우에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보이는데, ‘자(者)’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써야 하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¹⁴⁾ 제2조 정의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법 방해행위”¹⁵⁾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의 ‘불법행위’를 ‘불법방해행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⁶⁾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 2023.12.

15)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16) 다음과 같이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제22조의2(항공기 내 불법방해행위 저지에 대한 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불법방해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저지행위가 불가피하고 저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기장등

2.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장등의 요청을 받고 이에 협조한 사람

나. 국토교통부 의견

기장과 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기내 불법행위 저지를 위한 조치와 현행법의 처리를 담당하며, 승객도 기장 등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승무원 및 승객이 불법행위 저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을 통해 적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만, 면책상황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여 타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 출입문 개방 등에 대한 벌금형 신설(안 제46조제1항)

개정안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제23조),¹⁷⁾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0

17)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46조).

개정안은 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신설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 죄질과 행위자 책임에 비례하여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기내 폭행 및 협박은 20건, 비상문 개방 시도는 29건이 발생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건의 비상문 개방 시도 중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는 대부분 훈방처리 되었음(24건). 이에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이 신설될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항공기 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상문 개방 시도에 대한 징역형 사례 】

발생일	항공사	발생내용	처벌
'23. 5.26.	아시아나	대구공항 착륙중 210m 상공에서 출입문 개방	징역 3년, 집유 5년 * 7억원 손해배상
'23. 6.19.	제주항공	비행중 출입문 개방 시도	징역 3년(1심)
'23.11.23.	대한항공	비행중 출입문 개방 시도	징역 2년, 집유 4년(1심)

※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현행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는 규정과 징역형만을 두고 있는 규정이 모두 존재하는데, 항공기 파손죄 및 항공시설파손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죄질 및 법익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	징역형만 규정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개정안과 같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가중하는 한편,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 제46조를 개정하려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법률안들은 현행법 제46조가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벌금형 없이 항공기 내 폭행죄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법정형 선택 시 각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행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항공보안법」 내 타 위법행위와의 비교,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⁸⁾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여 벌금형을 신설할 경우, 개정안은 현행법 제46조제2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징역형만을 유지하고 있는데,¹⁹⁾ 제2

18) 2006헌가7,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06.6.29.

2010헌바472, 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11.24.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로 봄

19)

현행	개정안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항은 제1항에 비해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처벌수준의 균형을 위해 제2항에도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함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80